IPARK
역삼 센트럴 2차 아이파크

역삼 센트럴 2차 아이파크 입주자 모집공고

[코로나 19관련 견본주택 운영 안내 사항]

■ 국토교통부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견본주택 운영 관련 협조 요청'에 근거하여 역삼 센트럴 2차 아이파크의 견본주택 방문 시 입장이 제한될 수 있으며, 함께 운영되는 사이버 견본주택(http://www.centralipark2.co.kr)을 통해 분양일정, 청약안내, 상품안내 등 분양관련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방문은 역삼 센트럴 2차 아이파크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예약하신 분에 한하여 견본주택 방문가능기간(별도공지) 동안에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 견본주택 방문 예약은 역삼 센트럴 2차 아이파크 홈페이지 방문예약시스템을 통해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방문 기간 내 방문 시 아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장이 제한됩니다.
  - 견본주택 입장 전 및 견본주택 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 체온이 37.5℃가 넘을 경우(열화상카메라 및 비접촉체온계 운영)
  - 코로나 19 감염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 기타 견본주택 운영절차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 당사가 고지한 해당 기간 및 운영시간 외에는 견본주택 방문이 불가합니다.
※ 코로나 19확산상황 및 정부정책에 따라 견본주택 방문가능기간, 당첨자 서류접수 및 공급계약 일정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12-5번지에 공급되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강남구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이며,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도시형 생활주택)으로서 「주택법」 제64조 제1항 1호 「주택법시행령」 제73조 제1항 별표3에 의거 최초로 주택공급 계약체결이 가능한날부터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전매가 금지됩니다.(단, 향후 「주택법」 및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본 건축물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서울시 강남구청 재건축사업과 – 16910호(2020.10.21)로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 본 주택은 도시형생활주택(이하 "공동주택"이라 함.)으로써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3조 제2항 제9호에 따라,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5조, 제16조, 제18조, 제19조 제1항,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32조 제1항 및 제59조에 의한 규정만을 적용합니다.
■ 본 공동주택은 『주택법』 제57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제57조 등 규정에 의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 본 공동주택은 청약통장, 순위와 무관하며, 당첨되더라도 당첨자 관리, 재당첨 제한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0.10.23.(금)입니다.
■ 견본주택 운영은 2020.10.30(금요일) 오전 11:00부터이며, 인쇄물은 견본주택(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430 아이파크 갤러리)에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전화상담 및 견본주택 방문 고객 상담 등은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어 자격사항 및 유의사항 등을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신청 또는 계약체결 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라며, 미숙지 또는 미확인으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따른 불이익에 대하여는 청약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주택은 정부에서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을 받은 도시형생활주택입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의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 편집 및 인쇄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당사 견본주택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1인당 군별 1건씩 총 3개군(총 3건) 청약신청이 가능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I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강남구청 재건축사업과 – 16910호(2020.10.21)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12-5
▣ 대지면적 : 1,019.90㎡
▣ 건축면적 : 481.09㎡, 연면적 : 5,405.996㎡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 : 2,253.007㎡ / 부대복리시설 68㎡, 기계/전기실/기타 223.251㎡, 지하주차장 2,861.738㎡]
▣ 층별용도 : 지하1~4층 (기계, 전기실, 주차장) / 지상1층~지상7층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 부대복리시설-관리사무소, 무인택배함실, 방풍실, MDF실, 방재실, 쓰레기처리장 각각 1개소)
▣ 공급규모 : 공동주택 (도시형생활주택) 67세대
(19A형-2세대 / 19A-1형-2세대 / 19A1형-4세대 / 19A2형-8세대 / 19A3형-2세대 / 19A3-1형-2세대 / 19B형-6세대 / 19B1형-2세대 / 19B2형 - 2세대 / 19B3형-2세대 / 21A형-1세대 / 22A형-1세대 / 22B형-1세대 / 23A형-14세대 / 23A-1형-1세대 / 23A1형-2세대 / 23A1-1형-1세대 / 23A2형-3세대 / 23B형-1세대 / 23C형-1세대 / 24A형-4세대 / 24A1-1형-1세대 / 24A2형-1세대 / 28A형-1세대 / 30A형-1세대 / 30A1형-1세대)

▣ 공급대상

(단위 : ㎡, 세대)

구분	청약군	타입	공급세대수	층별	세대별 주택면적(㎡)						대지면적	비고
					세대별 공급면적(㎡)			기타공용	지하주차장	계약면적		
					전용면적	주거공용	공급면적					
도시형생활주택	1군	19A	1	2	19.6850	10.0930	29.7780	3.8570	37.8950	71.5300	13.49	202호
			1	3	19.6850	10.0930	29.7780	3.8570	37.8950	71.5300	13.49	302호
		19A-1	1	4	19.6850	10.0930	29.7780	3.8570	37.8950	71.5300	13.49	402호
			1	5	19.6850	10.0930	29.7780	3.8570	37.8950	71.5300	13.49	502호
		19A1	1	2	19.6850	10.4500	30.1350	3.8570	37.8950	71.8870	13.56	211호
			1	3	19.6850	10.4500	30.1350	3.8570	37.8950	71.8870	13.56	311호
			1	4	19.6850	10.4500	30.1350	3.8570	37.8950	71.8870	13.56	411호
			1	5	19.6850	10.4500	30.1350	3.8570	37.8950	71.8870	13.56	511호
		19A2	2	2	19.6850	10.3710	30.0560	3.8570	37.8950	71.8080	13.55	201호,212호
			2	3	19.6850	10.3710	30.0560	3.8570	37.8950	71.8080	13.55	301호,312호
			2	4	19.6850	10.3710	30.0560	3.8570	37.8950	71.8080	13.55	401호,412호
			2	5	19.6850	10.3710	30.0560	3.8570	37.8950	71.8080	13.55	501호,512호
		19A3	1	2	19.6850	10.4750	30.1600	3.8570	37.8950	71.9120	13.57	203호
			1	3	19.6850	10.4750	30.1600	3.8570	37.8950	71.9120	13.57	303호
		19A3-1	1	4	19.6850	10.4750	30.1600	3.8570	37.8950	71.9120	13.57	403호
			1	5	19.6850	10.4750	30.1600	3.8570	37.8950	71.9120	13.57	503호
		19B	1	6	19.8550	10.1560	30.0110	3.8900	38.2220	72.1230	13.61	602호
			5	6	19.8550	10.1560	30.0110	3.8900	38.2220	72.1230	13.61	605호, 606호, 607호, 608호, 609호
		19B1	1	6	19.9320	10.5590	30.4910	3.9050	38.3710	72.7670	13.73	603호
			1	6	19.9320	10.5590	30.4910	3.9050	38.3710	72.7670	13.73	610호
		19B2	1	6	19.8550	10.5160	30.3710	3.8900	38.2220	72.4830	13.67	611호
			1	6	19.8550	10.5160	30.3710	3.8900	38.2220	72.4830	13.67	604호
		19B3	2	6	19.8550	10.4370	30.2920	3.8900	38.2220	72.4040	13.66	601호, 612호
	2군	21A	1	7	21.9640	11.6650	33.6290	4.3030	42.2820	80.2140	15.13	702호
		22A	1	7	22.8800	11.8600	34.7400	4.4830	44.0460	83.2690	15.71	701호
		22B	1	7	22.1670	11.4770	33.6440	4.3430	42.6730	80.6600	15.22	704호
		23A	5	2	23.9280	11.9750	35.9030	4.6880	46.0630	86.6540	16.35	205호, 206호, 207호, 208호, 209호
			5	3	23.9280	11.9750	35.9030	4.6880	46.0630	86.6540	16.35	305호, 306호, 307호, 308호, 309호
			4	4	23.9280	11.9750	35.9030	4.6880	46.0630	86.6540	16.35	405호, 406호, 407호, 408호
		23A-1	1	4	23.9280	11.9750	35.9030	4.6880	46.0630	86.6540	16.35	409호
		23A1	1	2	23.9280	12.4370	36.3650	4.6880	46.0630	87.1160	16.44	210호
			1	3	23.9280	12.4370	36.3650	4.6880	46.0630	87.1160	16.44	310호
		23A1-1	1	4	23.9280	12.4370	36.3650	4.6880	46.0630	87.1160	16.44	410호
		23A2	1	2	23.9280	12.4130	36.3410	4.6880	46.0630	87.0920	16.43	204호
			1	3	23.9280	12.4130	36.3410	4.6880	46.0630	87.0920	16.43	304호
			1	4	23.9280	12.4130	36.3410	4.6880	46.0630	87.0920	16.43	404호
		23B	1	5	23.9870	11.9880	35.9750	4.7000	46.1770	86.8520	16.39	505호
		23C	1	7	23.1650	12.0430	35.2080	4.5330	44.6080	84.3490	15.91	703호
		24A	4	5	24.7430	12.5950	37.3380	4.8480	47.6320	89.8180	16.95	506호, 507호, 508호, 509호
		24A1	1	5	24.6970	13.0850	37.7820	4.8390	47.5440	90.1650	17.01	510호
		24A2	1	5	24.6970	13.0600	37.7570	4.8390	47.5440	90.1400	17.01	504호
	3군	28A	1	7	28.4640	14.6830	43.1470	5.5770	54.7950	103.5190	19.53	707호
		30A	1	7	30.4810	15.6740	46.1550	5.9720	58.6780	110.8050	20.90	706호
		30A1	1	7	30.4810	15.3600	45.8410	5.9720	58.6780	110.4910	20.85	705호

※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면적 등을 포함하고, 기타공용면적은 부대시설, 기계실, 전기실 등이 포함됨.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 원)

군별	청약군	타입	전용면적	공급면적	공급세대수	층별	세대당 공급금액			계약금		중도금				잔금
										1차(10%)	2차(10%)	1차(15%)	2차(15%)	3차(15%)	4차(15%)	(20%)
							대지비	건축비	합계	계약시	2020-12-11	2021-03-11	2021-07-12	2021-11-11	2022-03-11	입주지정일
도시형생활주택	1군	19A	19.6850	29.7780	1	2	237,238,564	338,561,435	575,800,000	57,580,000	57,580,000	86,370,000	86,370,000	86,370,000	86,370,000	115,160,000
			19.6850	29.7780	1	3	240,946,704	343,853,295	584,800,000	58,480,000	58,480,000	87,720,000	87,720,000	87,720,000	87,720,000	116,960,000
		19A-1	19.6850	29.7780	1	4	238,062,595	339,737,404	577,800,000	57,780,000	57,780,000	86,670,000	86,670,000	86,670,000	86,670,000	115,560,000
			19.6850	29.7780	1	5	240,534,688	343,265,311	583,800,000	58,380,000	58,380,000	87,570,000	87,570,000	87,570,000	87,570,000	116,760,000
		19A1	19.6850	30.1350	1	2	237,238,564	338,561,435	575,800,000	57,580,000	57,580,000	86,370,000	86,370,000	86,370,000	86,370,000	115,160,000
			19.6850	30.1350	1	3	240,946,704	343,853,295	584,800,000	58,480,000	58,480,000	87,720,000	87,720,000	87,720,000	87,720,000	116,960,000
			19.6850	30.1350	1	4	244,654,844	349,145,155	593,800,000	59,380,000	59,380,000	89,070,000	89,070,000	89,070,000	89,070,000	118,760,000
			19.6850	30.1350	1	5	247,126,937	352,673,062	599,800,000	59,980,000	59,980,000	89,970,000	89,970,000	89,970,000	89,970,000	119,960,000
		19A2	19.6850	30.0560	2	2	237,238,564	338,561,435	575,800,000	57,580,000	57,580,000	86,370,000	86,370,000	86,370,000	86,370,000	115,160,000
			19.6850	30.0560	2	3	240,946,704	343,853,295	584,800,000	58,480,000	58,480,000	87,720,000	87,720,000	87,720,000	87,720,000	116,960,000
			19.6850	30.0560	2	4	244,654,844	349,145,155	593,800,000	59,380,000	59,380,000	89,070,000	89,070,000	89,070,000	89,070,000	118,760,000
			19.6850	30.0560	2	5	247,126,937	352,673,062	599,800,000	59,980,000	59,980,000	89,970,000	89,970,000	89,970,000	89,970,000	119,960,000
		19A3	19.6850	30.1600	1	2	237,238,564	338,561,435	575,800,000	57,580,000	57,580,000	86,370,000	86,370,000	86,370,000	86,370,000	115,160,000
			19.6850	30.1600	1	3	240,946,704	343,853,295	584,800,000	58,480,000	58,480,000	87,720,000	87,720,000	87,720,000	87,720,000	116,960,000
		19A3-1	19.6850	30.1600	1	4	238,062,595	339,737,404	577,800,000	57,780,000	57,780,000	86,670,000	86,670,000	86,670,000	86,670,000	115,560,000
			19.6850	30.1600	1	5	240,534,688	343,265,311	583,800,000	58,380,000	58,380,000	87,570,000	87,570,000	87,570,000	87,570,000	116,760,000
		19B	19.8550	30.0110	1	6	239,339,843	341,560,156	580,900,000	58,090,000	58,090,000	87,135,000	87,135,000	87,135,000	87,135,000	116,180,000
			19.8550	30.0110	5	6	249,599,031	356,200,968	605,800,000	60,580,000	60,580,000	90,870,000	90,870,000	90,870,000	90,870,000	121,160,000
		19B1	19.9320	30.4910	1	6	239,339,843	341,560,156	580,900,000	58,090,000	58,090,000	87,135,000	87,135,000	87,135,000	87,135,000	116,180,000
			19.9320	30.4910	1	6	249,599,031	356,200,968	605,800,000	60,580,000	60,580,000	90,870,000	90,870,000	90,870,000	90,870,000	121,160,000
		19B2	19.8550	30.3710	1	6	239,339,843	341,560,156	580,900,000	58,090,000	58,090,000	87,135,000	87,135,000	87,135,000	87,135,000	116,180,000
			19.8550	30.3710	1	6	249,599,031	356,200,968	605,800,000	60,580,000	60,580,000	90,870,000	90,870,000	90,870,000	90,870,000	121,160,000
		19B3	19.8550	30.2920	2	6	239,339,843	341,560,156	580,900,000	58,090,000	58,090,000	87,135,000	87,135,000	87,135,000	87,135,000	116,180,000
	2군	21A	21.9640	33.6290	1	7	277,410,082	395,889,917	673,300,000	67,330,000	67,330,000	100,995,000	100,995,000	100,995,000	100,995,000	134,660,000
		22A	22.8800	34.7400	1	7	287,792,874	410,707,125	698,500,000	69,850,000	69,850,000	104,775,000	104,775,000	104,775,000	104,775,000	139,700,000
		22B	22.1670	33.6440	1	7	290,058,960	413,941,039	704,000,000	70,400,000	70,400,000	105,600,000	105,600,000	105,600,000	105,600,000	140,800,000
		23A	23.9280	35.9030	5	2	296,980,821	423,819,178	720,800,000	72,080,000	72,080,000	108,120,000	108,120,000	108,120,000	108,120,000	144,160,000
			23.9280	35.9030	5	3	300,688,961	429,111,038	729,800,000	72,980,000	72,980,000	109,470,000	109,470,000	109,470,000	109,470,000	145,960,000
			23.9280	35.9030	4	4	304,397,101	434,402,898	738,800,000	73,880,000	73,880,000	110,820,000	110,820,000	110,820,000	110,820,000	147,760,000
		23A-1	23.9280	35.9030	1	4	297,763,651	424,936,348	722,700,000	72,270,000	72,270,000	108,405,000	108,405,000	108,405,000	108,405,000	144,540,000
		23A1	23.9280	36.3650	1	2	296,980,821	423,819,178	720,800,000	72,080,000	72,080,000	108,120,000	108,120,000	108,120,000	108,120,000	144,160,000
			23.9280	36.3650	1	3	300,688,961	429,111,038	729,800,000	72,980,000	72,980,000	109,470,000	109,470,000	109,470,000	109,470,000	145,960,000
		23A1-1	23.9280	36.3650	1	4	297,763,651	424,936,348	722,700,000	72,270,000	72,270,000	108,405,000	108,405,000	108,405,000	108,405,000	144,540,000
		23A2	23.9280	36.3410	1	2	296,980,821	423,819,178	720,800,000	72,080,000	72,080,000	108,120,000	108,120,000	108,120,000	108,120,000	144,160,000
			23.9280	36.3410	1	3	300,688,961	429,111,038	729,800,000	72,980,000	72,980,000	109,470,000	109,470,000	109,470,000	109,470,000	145,960,000
			23.9280	36.3410	1	4	304,397,101	434,402,898	738,800,000	73,880,000	73,880,000	110,820,000	110,820,000	110,820,000	110,820,000	147,760,000
		23B	23.9870	35.9750	1	5	311,524,971	444,575,028	756,100,000	75,610,000	75,610,000	113,415,000	113,415,000	113,415,000	113,415,000	151,220,000
		23C	23.1650	35.2080	1	7	301,719,000	430,580,999	732,300,000	73,230,000	73,230,000	109,845,000	109,845,000	109,845,000	109,845,000	146,460,000
		24A	24.7430	37.3380	4	5	313,255,436	447,044,563	760,300,000	76,030,000	76,030,000	114,045,000	114,045,000	114,045,000	114,045,000	152,060,000
		24A1	24.6970	37.7820	1	5	313,255,436	447,044,563	760,300,000	76,030,000	76,030,000	114,045,000	114,045,000	114,045,000	114,045,000	152,060,000
		24A2	24.6970	37.7570	1	5	313,255,436	447,044,563	760,300,000	76,030,000	76,030,000	114,045,000	114,045,000	114,045,000	114,045,000	152,060,000
	3군	28A	28.4640	43.1470	1	7	355,981,451	508,018,548	864,000,000	86,400,000	86,400,000	129,600,000	129,600,000	129,600,000	129,600,000	172,800,000
		30A	30.4810	46.1550	1	7	386,965,021	552,234,978	939,200,000	93,920,000	93,920,000	140,880,000	140,880,000	140,880,000	140,880,000	187,840,000
		30A1	30.4810	45.8410	1	7	386,965,021	552,234,978	939,200,000	93,920,000	93,920,000	140,880,000	140,880,000	140,880,000	140,880,000	187,840,000

■ 공통사항

- 총 분양대금은 층, 타입 등을 감안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각 타입별 공히 소유권 이전 등기비용, 취득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 본 공동주택의 발코니확장 유무는 공급 주택형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발코니 확장이 법률적 가능한 세대에 한하여 일괄 무상 제공됩니다.
- 단위세대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이 가능한 주택형은 발코니 확장을 감안하여 설계되었고 이에 따라 발코니 확장이 가능한 분양주택의 발코니는 일괄 확장을 전제로 분양되며, 발코니 확장을 시공하여 공급하므로 계약자는 개별적으로 발코니 미확장을 선택할 수 없사오니 청약 및 계약 전 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향후 사업주체에 대하여 발코니 미확장 또는 발코니 미확장에 따른 공사비 상당금액의 지급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건축물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되었습니다.
- 전체가 공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주차장, 전기실, 기계실 등)은 전체 공용으로 하며, 각 호별로 기계실, 전기실, 주차장에 대한 금액이 상기 분양대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공급계약서에 기재된 건물의 계약면적 및 대지의 공유지분은 공부정리절차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에서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그 증감 비율이 3%이내에서 변동 될 경우 별도 정산을 하지 않기로 하며, 허용하는 오차를 초과하는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계약서와 등기부상의 면적차이에 대하여 분양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소유권이전 등기시까지 상호 정산합니다. 단, 단순착오에 의한 면적 정정이나, 소수점이하 면적 변동에 대해서는 차후 정산하지 않습니다.
- 중도금은 지정된 시점에 납부해야하며, 잔금은 입주지정일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단 중도금에 대해서는 납부일이 토/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 기준으로 함.)
(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II 청약신청 및 유의사항

■ 청약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0.10.23) 현재 만19세 이상인 분[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 및 법인
- 거주지역 및 청약통장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 1인당 신청가능 건수 : 도시형생활주택은 각 군별 1인당 1세대씩, 총 3건까지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단, 동일인이 동일군에 2세대 이상 중복 당첨시 청약신청 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
- 청약신청은 청약홈을 통한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해당 신청일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 청약이 불가합니다.
(직접 접수시는 역삼 센트럴 2차 아이파크 견본주택 [주소 :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430 아이파크 갤러리]에 접수 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해 부적격자 및 이중당첨자로 판명되는 경우, 계약 체결이 불가하고 계약 체결 이후에는 계약이 취소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예비당첨자는 별도 선정하지 않으며, 정당 당첨자 계약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시 당사에서 선착순 수의계약으로 공급합니다.
- 견본주택 내에는 사업승인 설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으며, 현장 확인 및 승인도서를 확인한 후 청약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급일정

구 분		장소 및 방법
청약일	2020. 11. 03~04(화~수) (2일간)	한국감정원 청약홈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 앱)
당첨자발표	2020. 11. 10(화) 16시 이후	한국감정원 청약홈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 앱)
계약일	2020. 11. 11(수) ~ 2020. 11. 12(목) 2일간 (체결시간 10:00~16:00)	역삼 센트럴 2차 아이파크 견본주택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430 아이파크 갤러리)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또는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청약은 PC (한국감정원 청약홈 www.applyhome.co.kr), 스마트폰('청약홈'어플 검색)을 통해 가능합니다.
  - 청약 전에 전국 주택청약 참가은행(국민, 신한, IBK기업, 수협, 농협, 우리, SC제일, KEB하나,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씨티)에서 반드시 인터넷뱅킹에 가입하고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인터넷뱅킹 가입자는 청약신청금 납부를 위해 1일(1회)이체한도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인은 인터넷 청약 불가하며, 대행은행인 국민은행 지점 방문을 통한 법인 창구접수만 가능합니다.
- 청약관련 궁금하신 사항은 견본주택 분양 상담전화(02-517-570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안내

이용 안내	• 거래은행 인터넷뱅킹 가입(공인인증서 보유)하신 분으로 거래은행 출금계좌에 청약신청금 이상의 출금 가능한 잔액을 유지하고 있어야 함(이체한도 확인)
방법 및 절차	• (모든 은행 이용자) 한국감정원 청약Home ① 접속 :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 청약신청 → '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민간임대' → 청약신청하기 ② 청약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주택명 및 군 선택 → 청약 신청 시 유의사항 확인 → 연락처 등(주소, 연락처) 입력 → 청약신청내역 확인 및 청약신청금 출금계좌번호, 비밀번호 입력 →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입력 → 청약접수 완료 → 신청내역 조회 ※ 청약접수 완료 기준은 17:30으로 청약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 시 청약신청이 완료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앱으로도 가능(구글플레이스토어 또는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청약신청금 및 납부방법

구분	청약신청금	납부방법
모든 군 공통	₩1,000,000 (금 일백만원)	• 청약 신청 시 : PC '청약홈' 홈페이지 및 스마트폰 '청약홈' 어플을 통한 인터넷 납부 • 주택청약 참가은행(국민, 신한, IBK기업, 수협, 농협, 우리, SC제일, KEB하나,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씨티)에 입출금 통장 개설 후 청약신청금을 이상을 예치하고 청약에 참가해야 함(인터넷 청약 시 거래은행 계좌에서 출금)

■ 직접 청약신청시 구비서류

구 분	구 비 서 류
본인신청시 (배우자포함)	1. 청약신청서(국민은행 교대지점 창구에 비치) 2. 본인 도장(대리청약시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인감증명서 제출필요) 3. 본인 확인증표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본인),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등록증 4. 청약신청금 5. 청약신청금 환불 받을 거래은행 계좌(청약자 본인 명의) 6. 예금인장 또는 본인서명
제3자 대리신청시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1) 인감증명 방식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오피스텔청약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2) 본인서명사실확인 방식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법 인	1. 청약신청서(국민은행 교대지점 창구에 비치) 2. 법인인감 및 법인 인감증명서 1통(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제출) 3. 사업자등록증 4. 청약신청금 5. 청약신청금 환불 받을 계좌(청약신청 법인 명의) 6. 법인대표이사 본인신청시 주민등록증, 재외동포는 국내거주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직원 및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대리인신분증 지참)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0.10.23)이후 발행분에 한합니다.
- 은행창구 청약접수는 상기 구비서류가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하며, 청약신청이 완료된 이후에는 구비서류를 반환하지 않습니다. 또한 청약신청 시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습니다.
- 청약신청 시 은행에서는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아니하고 신청자가 기재(입력)한 내용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따라서 신청자가 신청정보를 착오로 기재하여 당첨된 경우,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에게 있으며, 사업주체 및 은행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청약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 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 사업주체 및 은행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한국감정원에서는 당첨자 선정 시 신청자격 및 신청 건수에 대한 확인은 하지 않으며,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사업주체는 계약체결 시 동일인이 동일 군 내 중복 당첨시 모두 무효처리 하오니 신청 시 착오 없으시길 바라며, 동일 군 중복 당첨으로 인한 당첨 탈락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상기 제출서류는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일(2020.10.23)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되므로 용도를 본인이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당첨자의 청약신청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지 않고 전액 환불 됩니다. 청약금 환불은 청약신청시 신청자가 입력한 본인 명의의 계좌로만 입금합니다.(단, 청약 시 제출하신 환불계좌 오류 및 환불 불가 계좌일 경우 당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본 건축물의 층수, 향 등에 따라 입주 후 소음, 일조권, 조망권 등에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하여야 합니다.
- 신청자는 청약 및 계약 전 반드시 견본주택과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 시설의 유무 (한전 변전시설 인접, 경계벽 등 확인),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주위 환경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인한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공동주택은 도시형생활주택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2개를 초과하여 공간을 구획할 수 없음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입주 후 입주민의 세대 구획 변경등으로 인한 관련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에게 없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도시형생활주택의 발코니 면적은 전용면적의 크기와 비례하지 않으므로 타입별 확장한 실사용 면적을 견본주택에서 반드시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추첨 및 당첨자발표

- 추첨 : 한국감정원 전산 추첨을 통해 신청 군 및 타입별, 층·동·호수를 무작위로 추첨하여 당첨자를 결정합니다.
- 당첨자 확인은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하며, 착오방지를 위하여 유선확인은 불가하며 개별통보는 하지 않습니다.

당첨자 발표일시	당첨자 발표 장소
2020년 11월 10일 (화요일 16:00시 이후)	한국감정원 청약홈(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으로도 가능(구글 플레이스토어 또는 애플 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당첨자 안내사항

당첨자 계약기간 준수	• 반드시 지정된 당첨자 계약 기간 내 분양대금 납부계좌로 계약금 납부 완료 및 계약 구비서류를 준비 후 계약장소를 방문하여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함 •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 체결하지 않을 경우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호실 발생 시 관련법령에 의거 자격 제한없이 임의 분양함 •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장소, 미방문, 계약 미 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부정 당첨 유의사항	• 계약체결 이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할 수 있으며, 위약금을 공제함. 또한 관련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
기타사항	• 예비당첨자는 별도로 선정하지 않으며, 미계약 호실 발생 시 사업 주체가 수의계약으로 공급함 • 한국감정원 추첨을 통해 당첨된 청약자가 계약체결 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및 인터넷 청약 후 낙첨된 청약자는 사업자의 수의계약 공급 단계에서 수의계약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수의계약 공급과 관련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 청약신청금 환불방법

구 분	방 법
환불 대상	• 당첨자 및 낙첨자를 포함하여 신청자 전원
환불 기간	• 당첨자 발표일 익일 은행영업일 이후. 단,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제외
인터넷 청약자	• 당첨자 발표일 익일 은행영업일에 청약자가 신청 시 입력한 본인 명의의 청약신청금 출금계좌로 자동 환불
은행(창구)청약자	• 자동 환불 신청자 : 청약 시 접수은행에 개설 된 청약자 본인 명의 계좌로 자동 환불을 신청한 자는 당첨자 발표일 익일 은행영업일에 자동 환불됨 • 자동 환불 미신청자 : 당첨자 발표일 익일 은행영업일 이후에 청약 접수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환불 받아야 함

- 청약 시 환불 신청한 계좌가 환불계좌 오류 및 환불불가 계좌일 경우 사업주체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당첨자의 청약신청금도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지 않고 일괄 환불되며 환불금액은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환불계좌 명의자와 청약자 명의가 동일해야 환불이 가능합니다.)
- 청약신청금에 대한 환불 시 기간이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III 계약일정 및 유의사항

■ 일시 및 장소

- 계약체결 장소 : 역삼 센트럴 2차 아이파크 견본주택(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430 아이파크 갤러리, 연락처 02-517-5706)
- 계약체결 일정 : 2020. 11. 11(수요일) ~ 2020. 11. 12(목요일) 2일간 (체결시간 10:00~16:00)

■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계좌

구 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 금 주
계약금 및 분양대금 납부계좌	KB국민은행	750601-01-288923	아시아신탁㈜

- 1차 계약금을 분양대금 납부계좌로 무통장입금(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 기재)하여야 하며, 입금 후 입금증을 지참하고 견본주택으로 방문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 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서 미작성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의 통보없이 사업주체가 임의 분양할 수 있습니다.

■ 계약절차 및 유의사항

-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기 체결된 계약은 취소되며, 이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 체결 후라도 계약 취소 및 고발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지정된 납부일(중도금은 공급계약서 지정일)에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상기 납부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시기 바라며, 입금시 계약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시 : 503호 계약한 홍길동 ⇒ 503홍길동)
- 당첨된 호수를 확인 후 입금하시기 바라며, 계좌오류 등에 따른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건축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별도 제정하는 관리규약의 기준을 따릅니다.
- 계약 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사업주체, 중도금 대출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 일정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회사에서는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분양대금을 현금으로 직접 납부(이 경우 사업주는 중도금 납부를 별도로 통보할 의무가 없음)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 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예금주 아시아신탁(주)는 관리형토지신탁 계약에 의한 수탁자 겸 매도인으로서 상기 분양수입금을 관리합니다.
- 아시아신탁(주)는 관리형토지신탁계약에 따라 분양대금에 대한 자금관리 업무를 수행하며, 분양대금 반환 등을 포함한 매도인으로서의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책임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 미체결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의 통보없이 회사에서 임의 분양합니다.
- 청약신청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지 않으며 위 청약신청금 환불안내를 숙지하시어 반드시 환불받으시기 바랍니다.
- 당첨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 내용을 당사에 서면(주민등록등본 포함)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부동산 거래의 신고를 사업주체와 공동으로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의 신고에 따른 일정한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투기과열지구에 위치한 주택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1항에 따라 공급계약 체결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항에 따라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계약시 구비서류

구 분	구 비 서 류
본인 계약시	• 계약금 무통장 입금증 • 계약자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1통(용도 : 도시형생활주택 계약용) •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및 주민등록등본 1통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통(국내거소 사실증명서 1통)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 1통(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1통)
법인 계약시	• 계약금 무통장 입금증 • 사업자등록증 사본 1통, 법인인감증명 1통(용도 : 도시형생활주택 계약용) 및 법인등기부등본 1통, 법인인감(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1통) • 법인대표이사 본인 계약 시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1통(국내거소 사실증명서 1통),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1통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1통) ※ 직원 및 대리인 계약시 위임장, 대리인 도장,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지참 ※ 외국법인일 경우 : 관련법률상 토지취득허가서
제3자 대리계약시 추가 구비사항	※ 본인 이외에는 모두 제3자로(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 간주하며, 상기 본인 계약 체결 시 상기 서류 이외에 아래 서류를 추가로 구비 하여야 함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1통 (용도 : 도시형생활주택 계약 위임용) –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견본주택 내 비치) –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및 도장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본인이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된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계약시 외국인인 경우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은 청약신청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계약조건

- 계약자(수분양자)는 본 입주자모집 공고문의 제반 유의사항을 숙지하셔야 하며, 이의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공동주택의 배치구조 및 향, 층 호수별 위치에 따라 입주 후 소음, 진동 등으로 인한 환경권 및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권 등 침해될 수 있음을 사전에 확인하시고 계약체결 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이후 이와 관련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주차장, 승강기의 용량, 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변경)승인도서의 내용에 준하며, 이로 인해 시행 또는 시공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분양대금은 본 사업을 위하여 진행된 토지비, 공사비 등의 상환을 위해 사용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계약체결 후 이와 관련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사기간내 본 건축물의 구조개선 등을 위하여 임의의 설계변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추가공급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설계변경에 관해서는 사업주체에게 위임한다.)

■ 중도금 대출안내

-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별도공지 및 안내 예정
- 대출금액 : 사업 주체가 지정한 금융기관에서 분양대금의 관련 부동산규정/규제 범위 내에서 이자후불제 조건으로 중도금 대출을 지원합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분양대금 9억이하 40%이내 가능, 9억이상은 중도금대출 불가함. 단, 본 주택은 투기과열지구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최대 대출금액은 부동산 정책의 변경, 대출기관의 규정, 고객의 소득수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은행에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자는 부동산정책의 변경 및 대출기관의 규정,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상이 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경우 계약자 본인 책임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는 정책의 변경 및 금융시장 변화 또는 대출기관 규제 등에 따라 사업 주체의 중도금 대출 알선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 하여야 합니다.
- 금융기관 또는 보증기관의 중도금 대출협약 조건에 의거 주택형별로 계약금 완납 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고 계약금 일부 미납 시에는 중도금 대출이 불가합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제반 경비는 계약자의 부담으로 하며, 계약자 사정에 의한 대출 불가 또는 대출금 감액시 납부조건에 따라 계약자가 부족금액을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은 당해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의 50% 이상이 투입되고,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인 때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입일자는 예정일자 이고,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중도금 및 잔금 납입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요구로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 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잘못이 아닌 계약자의 결격사유에 기인하므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중도금 대출보증(9억원 이하 주택만 해당)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의 경우 세대당 1건으로 제한되었으며, 금융기관의 대출조건에 따라 일부 중도금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가 대납하던 중도금 대출 후불이자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중도금대출 최초 실행일로부터 사업주체가 지정한 입주 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의 후불 대출이자는 사업주체가 대납하되, 계약자는 입주시 사업주체에서 지정한 기일 내에 대납이자를 사업주체에 일시납부하여야 하며,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 발생하는 대출이자에 대해서는 계약자 본인이 해당 대출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알선하지 않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자가 직접 대출받은 경우 그에 대한 이자는 계약자가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 신청 관련 안내는 당사 의무사항이 아니며 "개인사유로 인한 대출 미신청" 또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 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계약자는 입주 전까지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여야 합니다. (대출금을 담보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대출금융기관에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 후 담보대출로 전환한 이후에 공급금액을 전액 완납하여야 함)
- 분양사무소 및 견본주택은 대출 금융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사와 분양상담 시 대출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금융기관 심사를 통하여 대출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에 고객의 대출비율 축소 또는 대출 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 주체 및 시공사에 대한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실계약자, 법인, 외국인의 경우 중도금 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적격대출 시 대출 금융기관과의 중도금 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 금융기관에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사업 주체가 알선한 대출의 대출 기간 만료 시(준공 후 미입주 등) 금융기관의 대출 기간 연장 및 공정률에 따른 중도금 납입 일자의 변경에 대해 별도의 절차 없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공급계약서의 약관에 따릅니다.

■ 입주자 사전방문

- 입주자 사전방문 안내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제27호에 따라 입주개시 전 약 1~2개월 전에 특정일자를 통보하여 입주자 사전방문 행사를 실시할 예정임
- 사전방문 확인대상 :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 확인

■ 입주예정일 : 2022년 06월(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 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전쟁, 내란,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노동조합 파업 및 전염병 발생,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 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보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
- 입주시 단지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회사에서 선수관리비를 부과합니다.
- 사업주체와 시공사는 수분양자에 대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채권회수를 위하여 입주관리(분양대금, 보증부대출금 등 채무 미완제시 입주 및 소유권등기의 거부, 채무변제의 독촉, 가압류 등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적절한 조치를 위한 통지 등을 말함)를 이행하며, 이와 관련하여 수분양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민원을 제기할 수 없으며, 또한 민·형사상의 어떠한 책임도 물을 수 없습니다.

IV 기타 유의사항

■ 공통 유의사항

- 주택공급신청서의 [주택형] 또는 [형]란은 평형으로 기재하지 말고 입주자모집공고상 [주택형(㎡)]으로 기재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면적은 소수점 2째 자리까지 표현되므로 면적 계산상 소수점 3째 자리에서 반올림방식 차이로 인해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는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 평형 환산법 = 형별면적(㎡)×0.3025 또는 형별면적(㎡)÷3.3058
- 2009.4.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 공급면적(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 기준에서 주거전용면적만을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며, 당사는 주택형 오기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계약체결 후 해약하게 되는 경우 계약시 약관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합니다.
- 단지내 부대시설은 공동주택의 복리시설이면서 별도의 시설로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청약 및 계약 전에 사업부지 내, 외 현장을 반드시 방문하시어 주변현황 및 현장여건, 주변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 및 계약 체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도시형생활주택은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질서를 어지럽힐 경우에는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단위세대 마감자재 내용은 주택형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 및 모형, 홈페이지 상의 마감재리스트, 인쇄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도면과 상이할 경우 견본주택을 우선으로 함)
- 각종 홍보물 및 사이버 VR,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도 상의 단지내 커뮤니티시설의 내부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인테리어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특화디자인 계획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 이전 제작, 배포된 홍보물은 사전 홍보 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견본주택 방문 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또한 홍보과정에서 주변 환경, 개발계획, 교통여건 등의 계획 또는 예정사항은 추후 관련정책 등의 변화로 변경 가능하오니, 관련사항별 관계기관에 반드시 본인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을 하여야 하며, 향후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급안내문 및 카탈로그 등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및 현장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계약체결 시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서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 각종 인쇄물에 표현된 옥상옥탑부, 주동형태, 창호형태, 측벽디자인, 외부색채, 외벽로고사인, 외벽마감, 식재, 포장, 단지 내 시설물의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 등의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분양 시에 제시된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사업시행변경인가 또는 설계의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권리를 사업주체에 위탁합니다.
- 본 도시형생활주택의 공급가격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 층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주택형별 공급가격의 상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본 도시형생활주택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되며, 계약금을 제외한 이자 및 금융비용 등은 청구하실 수 없습니다.
- 본인 동·호수 지정 시 동일 평형이나 견본주택과 달리 평면이 좌우대칭이 될 수 있으니 청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 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최종 건축허가 승인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수락 하에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고 또한, 건축허가 변경 등 관련 법규에 대한 제반서류는 요청 당사자가 징구하여 사업 주체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도시형생활주택의 현장여건 및 구조/성능/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법규(건축법, 주택법 등)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본 도시형생활주택의 계약체결일 이후 주변단지의 신축, 단지 내 공용 시설물 및 도로선형의 변경, 단지 내 설치되는 옹벽, 석축 등의 종류, 높이, 이격거리 등의 변경 등과 배치상 세대 상호간의 향이나 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사생활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공공장소인 휴게공간과 필로티, 주민공동시설, D/A(설비 환기구), 쓰레기 분리수거장, 실외기, 상가, 관리실 등의 설치로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소음피해,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도시형생활주택은 「공동주택 바닥 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824)을 준수하며 층간소음·진동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저층부 및 고층부 세대는 가로등 및 야간조명, 주차장 진·출입 차량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단지 지상에 도로가 없는 도시형생활주택 단지로 이삿짐 운반시 엘리베이터를 사용해야 합니다.
- 개인적인 인테리어 공사 등으로 인한 세대 내·외부 파손 및 훼손 사항은 본인 책임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 본 도시형생활주택의 내부 구조벽체 제거 및 변경은 불가하며, 이를 어길 경우 형·민사상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확정 측량으로 인한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며 이 경우 부대복리시설 면적 조정 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부대시설은 사업주체가 설치하고 운영 및 관리 등은 입주 후 입주자 부담으로 입주자가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인수, 인계하기 전까지 위탁관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 계약장소에서 발생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당사와 무관한 사항입니다.
- 도시형생활주택 및 기타 건축물의 외관은 관할관청의 이미지 개발에 따른 경관계획(야간경관조명 포함) 및 색채계획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경관조명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보수/관리 및 특정 서비스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 홍보물 사인물, 소방관련 시설물, 영구배수시스템 유지, 휴대폰 및 인터넷을 이용한 홈네트워크 서비스 운영 및 유지 비용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입주 후 상당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도시형생활주택 단지는 안전관리 시스템을 위하여 CCTV를 설치함에 따라 프라이버시가 불리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른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지구 내 및 인근의 신설·확장 도로는 인·허가 추진일정 및 관계기관 협의 결과 등에 따라 개설시기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계약자(입주자)는 본 계약 외 발코니 확장 부위에 개인적으로 시공·설치한 바닥단열 및 마감재, 섀시 등의 제반 하자에 대해서는 시공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준공 입주 후 지하주차장 및 기타공용 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피트공간은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본 도시형생활주택의 전실 및 홀 등 주거공용부분을 전용공간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 시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세대내부의 커튼박스의 길이 및 형태, 깊이는 천장 내부의 설비(소방법에 의한 세대 스프링클러 위치 등) 및 전기 배관 등의 시설물 위치로 인해 변경되어 시공되어질 수 있습니다.
- 세대 천장 내부에 설치된 환기 장치 가동 시 운전소음이 발생하여 거실, 침실내로 전달될 수 있으며, 각 실내 환기구 위치 및 개소는 성능 개선을 위하여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환기장치의 필터 교체 및 유지관리를 위한 점검구가 설치되며 전열교환소자 및 필터는 사용빈도에 따라 교체주기가 다를 수 있고 입주자가 부담하여 교체하여야 합니다.
- 주방 상부장 뒷면으로 가스배관이 설치될 예정임으로 가스배관이 설치되는 상부장은 깊이가 다를 수 있습니다.
- 가스배관경, 인입경로(위치)등은 도시가스 공급 측과 협의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의 주방 싱크대 상부에 렌지후드 배기 덕트가 노출될 수 있고, 천장에는 FD 점검구가 설치되며 그 위치는 세대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세대내 설치되는 에어컨은 무선리모콘으로 조절하는 냉방전용 시스템에어컨으로써 공용 실외기가 설치되며, 전력분배시스템에 의해 세대별 사용량에 따라 요금이 부과됩니다.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의 모델 또는 설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대시설 내 입주민을 위한 A/S 센터가 운영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시공자에게 발생하는 시설 사용에 대한 일체 비용(임대료)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세대 내부 일반, 주방가구 및 거울, 욕실장 등이 설치되는 부위의 비 노출면은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 세대 내에는 보안용 CCTV가 설치될 수 있으며, 본 공사 시에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 실내 벽체 및 천정에 설치되는 점검구는 설비공사 등의 유지 관리를 위해 수량이 증감될 수 있으며, 사양,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실에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인접세대 및 동일세대 내 각 부위별 확장 여부(상하좌우)에 따라 단열재 설치로 인한 벽체 돌출 및 실사용 면적의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타사 또는 당사 타 현장분양 공동주택의 마감 사양, 설치되는 부대시설 및 조경과 본 공동주택을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건축허가 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공동주택과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해 내진설계가 되어 있으며, 동 기준에 의한 내진 능력은 수정 메르칼리 진도등급 VII, 최대유효지반가속도는 0.197g입니다

■ 공동주택

- 본 공동주택은 타입, 향, 층별에 따라 발코니 확장여부, 노대 여부, 보일러실 실내/외 설치 등을 차별화하여 공급하므로 청약 또는 계약전 반드시 견본주택을 방문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후면 발코니 유무, 발코니 폭, 콘크리트 난간 높이는 동 위치 및 층수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실제 시공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확장면적, 발코니 유무, 노대면적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건축물은 법적인 단열기준에 따라 설계, 시공됩니다. 발코니 확장부위, 노대인접 부위 등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으며, 실내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발코니 섀시 및 유리창 표면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며 이로 인하여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같은 주택형이라 하더라도, 발코니 입면 변화 및 창호 크기 및 위치 등의 차이로 서비스 면적과 채광 및 환기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과 발코니 창호의 설치 유무, 형태 및 사양은 동별, 층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 및 창호는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고, 실시공시 난간 및 창호의 개소 및 위치, 난간의 높이, 난간 및 창호의 사양(제조사, 브랜드, 창틀, 하드웨어, 유리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 배관으로 소음이 발생할 수 있고, 일부 배관이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시공되어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하부 바닥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 우수관 및 배수관의 위치 및 사이즈는 변경될 수 있으며, 생활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별 현관 전면에 복도 및 엘리베이터홀 설치로 프라이버시 간섭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전에 해당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일부 지하층 엘리베이터 홀 및 주차장 연결통로 등에 주변과의 온도차 등에 의해 결로가 발생될 수 있으며, 이를 제거하기 위한 환기설비 가동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될 예정입니다.
- 엘리베이터 홀은 채광창호의 설치 유무 및 창호크기, 또는 창위치에 따라 부분적으로 채광이 제한됨을 사전에 인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창호의 크기 및 형태는 설계변경 등의 절차를 통해 실제 시공시 일부 변경될 수있습니다.
- 세대 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세대 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 습관에 따라 발코니 샤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 환기 등으로 예방하셔야 하며 이로 인한 하자보수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 내부 마감재, 가구, 전기설비 설치물이 시공되면서 일부 사용할 수 없는 공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외벽 및 세대간벽 등 단열설치부위의 결로 발생으로 인한 하자방지를 위하여 동일한 주택형이라도 부분적으로 벽체구성 및 마감의 바탕이 일부 다를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의 샤워실 단차는 물 넘김을 방지하기 위한 설계로 바닥 구배 시공으로 인해 세대별로 다소 높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샤워실 출입시 문짝에 의한 신발 걸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주방용 자동식 소화기 설치로 인하여 주방가구 상부장 일부공간의 사용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가스 인입배관 및 가스미터기가 설치되며, 이에 따라 선반의 위치 및 크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홈통 및 드레인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인접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소음 등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목문, PVC창호의 상하부면의 마감재는 부착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본 공사시 시공성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걸레받이는 본 공사시 하자발생 방지를 위해 PVC위 래핑 또는 도장으로 시공될 수 있습니다.
- 현관 신발장, 주방가구, 일부 붙박이장 등 수납공간의 크기와 마감자재는 주택형별로 상이하므로 이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방가구, 붙박이장, 신발장 등 가구 하부 및 후면에는 마루, 타일, 벽지 등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거실 및 주방, 침실에 시공되는 마루자재는 스팀청소기 및 물걸레 등 습기를 이용한 청소는 목재 고유한 특성상 장시간 수분 노출시 변형, 비틀림 등 우려가 있습니다.
- 주방 상판은 무늬와 색상이 동일하지 않을 수 있으며, 상판 크기와 형태에 따라 나누어 제작/설치되는 관계로 본 시공시 연결부위가 발생(세대별로 위치가 다를 수 있음)되며, 제품 특성상 스크래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타일, 석재, 바닥재, 가구류, 목창호류, 걸레받이, 벽지 등 자재의 특성상 균등한 색상 및 무늬가 다를 수 있으며, 자재자체의 품질상 하자판단은 KS기준에 명시된 내용에만 한정합니다.
- 공장생산 자재(타일 등)의 경우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함. 단, 일부 중국산 자재(타일 등)의 경우 KS기준 시험성적서가 없거나 제품 생산기준이 KS기준과 일부 상이할 수 있으며, 실제 시공시 타일 나누기(현관, 욕실, 발코니 등 타일이 시공된 부위)는 견본주택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필로티 상부층 세대는 외부 통행에 의한 소음발생으로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으며, 필로티 위층의 바닥난방의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 세대내 문 및 창의 위치 및 크기는 시공과정에서 이동,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부세대는 공사 시행 중에 시공을 위하여 샘플하우스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옥탑지붕, 지붕, 측벽, 입면(전후면 창호, 난간, 발코니 날개벽의 길이, 경관조명)등의 디자인 및 장식물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 세대 외벽면에 장식등이 부착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설치된 모든 창호의 크기 및 위치, 하부턱 높이, 난간대 디자인 및 높이는 본 공사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싱크대 하부에는 설비 배관 등이 설치되며 이로 인해 싱크대 하부공간이 부분 수정되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실외기는 층별외기에 설치되고, 보일러는 개별실에 설치됨으로 인해 인접세대에 소음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홍보물 관련 사항

- 견본주택은 확장세대 기준 1개 타입(23A Type)으로 시공되어 있으므로 다른 타입, 주택형 선택 시 발코니 확장여부, 노대, 품목 등을 단위세대 CG와 안내책자로 확인하시기 바라며, 또한 계약 전에 세대 내부, 가구배치, 실면적 등 견본주택 설치 유형과 다른 사항을 숙지하여 계약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목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등 마감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 시 견본주택과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의 전시품 및 연출용 시공부분, 카탈로그,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는 상이할 수 있으며, 식재 및 시설물의 위치, 규모, 색채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각종 분양홍보자료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이며, 향후 변경 및 취소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업부지 및 주변 환경 개발계획을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향후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종 홍보물에 표시된 개발계획은 현재의 계획 및 예정사항을 포함하므로 향후 관계기관의 인허가 진행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 후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평면 설계 및 마감자재 등을 촬영, 보관할 예정입니다.
- 사이버 견본주택의 VR동영상은 견본주택을 촬영한 것으로 기본 마감자재 이외의 디스플레이를 위한 전시품목이 포함된 VR동영상이므로, 사이버 견본주택상의 전시품목 및 제공품목 등은 견본주택을 방문하시어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내 건립세대, 세대 CG, 주민공동시설, 카탈로그 및 각종 홍보물 등에 표현된 가구, 소품, 운동기구, 디스플레이 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으며 단지모형의 조경, 차보도선형, 위치, 거리, 폭, 식재, 주변환경 및 부지 고저차 등은 실시 설계 후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동일한 세대타입이더라도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에 표현된 평면과 대칭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카탈로그 및 각종 홍보물 상의 가구 및 각종 내부 마감재는 실제 색상 및 패턴과 상이할 수 있으며, 소수점 이하 숫자는 실제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 된 스프링클러헤드와 감지기는 본 공사와 무관한 견본주택용 소방설비로 스프링클러헤드, 감지기의 위치 및 개수는 본 공사시 소방법에 맞추어 설치됩니다.
- 견본주택 및 홈페이지에 제시 된 주택에 시공되는 제품은 자재의 품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부득이할 경우
-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 콘센트, 스위치, 온도조절기 등 전기배선관련 제품과 월패드 관련 제품 사양 및 바닥배수구, 점검구, 위생기구, 수전, 악세서리류 등의 제품사양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인승, 속도, 탑승위치 등)은 건축허가도서 준하여 이로 인해 시행사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에 시공된 외부창호 등은 본 공사시 입찰결과에 의해 제조사, 브랜드, 하드웨어, 프레임일부, 개폐방향, 형태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당첨자는 계약 체결 시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체결해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서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 계약 후 주방가구, 일반가구 규격 및 배치불만, 전자제품 사용 불편 등 견본주택에 설치된 배치 평면 및 가구류에 대하여 변경을 요구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주택 특성상 세대내 가구배치, 평면배치 등을 입주자 개인의 기호에 맞게 변경할 수 없으며 내부 시설물의 변경 필요시 준공 및 시설물인수인계 후 입주자 개인이 직접 시행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시 세대 마감자재(수전 및 액세서리류)의 설치 위치는 마감치수 및 사용자 편의로 고려하여 견본주택에 설치되는 위치와 일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목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걸레받이, 벽지, 도장, 타일 등 마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시 견본주택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천연소재 자재의 경우 천연재료의 특성상 견본주택과 일부 상이한 색상과 무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에어컨, 욕실환기팬, 온도조절기, 환기디퓨저, 바닥 배수구의 제품사양, 규격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내 천정몰딩은 하자예방 및 시공성향상을 위해 설치되며 견본주택과 디자인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단지배치/조경

- 건물과 건물사이의 보행자 통로, 주변 도로 등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도로 인접 및 주변부지의 공사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배치도 상의 각 시설의 명칭 및 내용은 인허가과정, 법규 변경, 현장여건 및 상품개선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출입구, 부대시설, 주차출입구 등 단지내 시설물 등으로 인해 인근 해당 동 및 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 사생활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야간조명 효과 등에 의한 눈부심 현상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도로 측에 면한 세대는 소음에 의한 영향이 있을 수 있으며, 단지배치 특성상 단지내외 도로(지하주차장 램프 포함)와 단지 내 비상차로 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에는 차량 소음 및 전조등 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계약자는 사업주체와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쓰레기 분리수거장은 지상1에 설치될 예정이며, 폐기물 수거 차량의 상시 접근 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폐기물로 인한 냄새, 분진, 해충 등에 의해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므로 계약시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일부 세대는 옥외 보안등에 의한 간섭이 있을 수 있으며, 옥외보안등 관리에 따른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관리규약에 따릅니다.
- 조경 식재 및 시설물, 주변 인접대지와 레벨차이가 있는 부분은 추후 본 공사시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보행도로 색상 및 패턴 등은 본 공사시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공용부(기계실, 전기실, 주차장 등)에 대한 운영, 유지관리비는 기계, 전기 시스템 및 관리주체에 따라 각각 다르게 부과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

- 지하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면적 증감, 주차대수 변경 및 위치이동 등을 포함) 될 수 있으며, 입주자 전체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차장으로 각 세대별로 주차라인을 지정하여 주차 할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의 주차는 주차장의 위치 및 형태 등에 따라 주차장 이용의 사용성 및 편의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등 단지 내 부대시설 사용에 대하여 현재의 배치 및 이에 따른 사용시 계단실 등의 위치에 따라 거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현재의 배치 및 사용상의 문제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이로 인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 진출입 경사로는 동절기에 차량의 미끄럼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부 지하 주차장에 트렌치가 설치될 수 있으며, 그 트렌치는 구배가 없고 시공 허용 오차로 인해 일부 구간에 물이 고일 수 있습니다.
- 주차대수는 세대 당 1대 미만으로 계획 됨을 사전에 인지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지하주차장은 일부 구간에서 교차로가 형성되며, 교차 부분에서는 보행자 동선과 차량동선의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주차장 차로 및 출입구의 높이 : 차로폭 6m, 출입구 2.3m • 본 건물의 주차장은 공동주택 용도의 주차장 용도로 48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전기/설비

- 본 공동주택은 개별난방 방식으로 보일러가 설치되어, 동절기에 관리 소홀로 동파가 발생할 수 있으며,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으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동절기 보일러 연도의 결로로 인해 낙수가 발생할 수 있으며, 동절기 결로낙수와 우수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복도 및 세대 점유공간 천장 내부 또는 상부장의 공간이 기계설비 및 전기시설물, 부대시설의 배관 및 덕트, 가스배관 등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세대온수분배기, 급수급탕분배기, 세대분전함, 통신단자함 등이 주택형별로 설치되는 위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싱크대 하부에는 온수분배기가 설치될 예정으로, 이로 인해 싱크대 하부공간이 부분 수정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내 조명기구, 홈네트워크 관련제품, 세대 분전함, 통신단자함, 배선기구류의 설치위치는 본 공사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홈네트워크 관련 제품의 경우, 본 시공시 설치 시점에 따라 일부 디자인 및 기능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각종 수전, 드레인, 선홈통, 보일러 등의 설치 위치, 규격 및 개수는 변경(위치변경, 추가 또는 미설치 등)될 수 있습니다.
- 세대내 실내환기는 기계환기 방식이 적용되어 거실 상부에 전열교환기가 노출형으로 설치될 예정이며, 공사시 전열교환기의 사양, 제조 및 설치업체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내 실내환기는 기계환기방식으로 전열교환기는 거실과 각침실 천정에 시공되며 작동중 소음,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 환기용 급배기 슬리브 위치 등은 설비, 전기 계통을 고려하여 일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원활한 이동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지하주차장 및 지상 환기창(또는 녹지구간)에 이동통신 안테나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사업부지 주변 여건상 단지내 이동통신서비스가 불가능하거나 어려울 경우 기간통신사업자(KT, SKT, LGU+ 등)가 전파측정 등을 실시하고, 옥상층 또는 기준층 내에 이동통신중계장치 및 안테나 등이 설치될수 있으며, 이로 인해 소음, 진동, 빛의 산란, 미관저해 등의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 옥탑 및 옥상에 의장용 구조물, 위성안테나, 공청안테나, 피뢰침(측벽), 옥외조명, 태양광발전설비,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바람, 장비비에 따른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하에는 전기실·발전기실이 설치되며 발전기의 정기가동 및 비상가동으로 인해 소음 및 진동, 매연이 실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의 통신단자함, 세대분전반 위치는 관계법령에 따라 노출되어 설치되며, 본 공사시 위치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와 면하거나 또는 인접한 세대는 엘리베이터의 운행 중에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 단자함, 조명기구, 월패드 및 배선기구류의 설치위치는 본 공사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축물녹색건축인증(그린4등급), 친환경주택성능인증

건축물녹색건축인증	친환경주택성능인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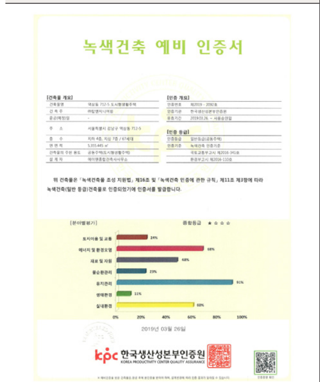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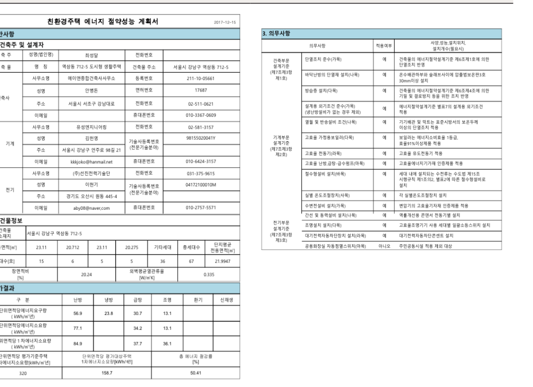

녹색건축 예비 인증서

위 건축물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및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3항에 따라 녹색건축(일반 등급)건축물로 인증되었기에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19년 03월 26일

kpc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KOREA PRODUCTIVITY CENTER QUALITY ASSURANCE

[분야별평가]
종합등급 ★☆☆☆
토지이용 및 교통 24%
에너지 및 환경오염 68%
재료 및 자원 48%
물순환관리 23%
유지관리 91%
생태환경 11%
실내환경 60%
0% 20% 40% 60% 80% 100%

친환경주택 에너지 절약성능 계획서 2017-12-15

1. 일반사항

가. 건축주 및 설계자

건축주		성명(법인명)	최성달	전화번호	
건축물		명 칭	역삼동 712-5 도시형 생활주택	건축물 주소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12-5
건축사		사무소명	에이앤종합건축사사무소	등록번호	211-10-05661
		성명	안병돈	면허번호	17687
		주소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전화번호	02-511-0621
		이메일		휴대폰번호	010-3367-0609
설비설계자	기계	사무소명	유성엔지니어링	전화번호	02-581-3157
		성명	김헌영	기술사등록번호(전문기술분야)	98155020041Y
		주소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98길 21		
		이메일	kkkjoko@hanmail.net	휴대폰번호	010-6424-3157
	전기	사무소명	(주)선진전력기술단	전화번호	031-375-9615
		성명	이헌기	기술사등록번호(전문기술분야)	04172100010M
		주소	경기도 오산시 원동 445-4		
		이메일	aby08@naver.com	휴대폰번호	010-2757-5571

나. 건물정보

건축물 소재지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12-5						
전용면적[㎡]	23.11	20.712	23.11	20.275	기타세대	총세대수	단지평균 전용면적[㎡]
세대수[호]	15	6	5	5	36	67	21.9947
창면적비[%]	20.24		외벽평균열관류율[W/㎡K]	0.335			

2. 평가결과

구 분	난방	냉방	급탕	조명	환기	신재생
단위면적당에너지요구량(kWh/㎡년)	56.9	23.8	30.7	13.1		
단위면적당에너지소요량(kWh/㎡년)	77.1		34.2	13.1		
단위면적당 1 차에너지소요량(kWh/㎡년)	84.9		37.7	36.1		

단위면적당 평가기준주택 1차에너지소요량[kWh/㎡년]	단위면적당 평가대상주택 1차에너지소요량[kWh/㎡년]	총 에너지 절감률[%]
320	158.7	50.41

3. 의무사항

	의무사항	적용여부	사양,성능,설치위치,설치개수(필요시)
건축부문 설계기준(제7조제3항제1호)	단열조치 준수(가목)	예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 반영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나목)	예	온수배관하부와 슬래브사이에 압출법보온판3호 30mm이상 설치
	방습층 설치(다목)	예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4조에 의한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 반영
기계부문 설계기준(제7조제3항제2호)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가목)(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예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별표7의 설계용 외기조건 적용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나목)	예	기기배관 및 덕트는 표준시방서의 보온두께 이상의 단열조치 적용
	고효율 가정용보일러(다목)	예	보일러는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효율91%이상제품 적용
	고효율 전동기(라목)	예	고효율 유도전동기 적용
	고효율 난방,급탕·급수펌프(마목)	예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적용
	절수형설비 설치(바목)	예	세대 내에 설치되는 수전류는 수도법 제15조 시행규칙 제1조의2, 별표2에 따른 절수형설비로 설치
	실별 온도조절장치(사목)	예	각 실별온도조절장치 설치
전기부문 설계기준(제7조제3항제3호)	수변전설비 설치(가목)	예	변압기의 고효율기자재 인증제품 적용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나목)	예	역률개선용 콘덴서 전동기별 설치
	조명설치 설치(다목)	예	고효율조명기기 사용 세대별 일괄소등스위치 설치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라목)	예	대기전력자동차단콘센트 설치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마목)	아니오	주민공동시설 적용 제외 대상

※ 각 인증별 등급의 항목별 점수와 평가결과는 현장여건 및 본인증 심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각 인증에서 제시된 시험성적서는 단순 샘플자료이며, 현장여건 및 본시공, 인증기관 협의 등에 따라 다른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5조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에 의거 적용됨
■ 본 공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3항제12호에 따른 기본선택품목이 별도 없음.

V 기타 주요사항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구 분	감리회사명	감리금액(원, VAT 별도)	사업장 소재지
공사 감리 (건축, 토목, 설비, 전기, 통신, 소방, 조경)	에이앤종합건축사사무소	사억일천만원정 (₩410,000,000)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101안길 15-1 진산빌딩 2층

※ 감리회사는 업체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보증에 관한 사항 : [본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제17호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분양보증을 득한 도시형생활주택임]

- 분양보증인 : 주택도시보증공사

(단위 : 원)

보증기간	보증금액(원)	보증서 번호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로부터 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포함)까지	₩ 36,011,280,000	제 01282020-101-0010800 호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사고의 정의,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등의 납부

제1조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회사는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보증회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제2조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① 보증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허위계약·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보증회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보증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보증회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다만, 사양선택 품목과 관련한 금액이 보증금액에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② 보증회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보증회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보증회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제4조 (보증사고)
① 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② 보증사고일은 보증회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보증회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함

■ 관리형 토지신탁 관련 고지사항

계약자(수분양자)는 다음 각 항에서 규정한 사항을 분명히 인지하였음을 확인하고,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1. 본 분양목적물은 「신탁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탁자 ㈜탑파트너스와 토지를 수탁받은 수탁자 아시아신탁㈜ 및 시공사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간에 체결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 방식으로 시행 및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수탁자인 신탁사가 분양사업자가 되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4조 2항에 따라 별도의 신탁계약체결을 요하지 않으며, 계약자는 다음 사항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2. 본 사업은 시행자인 ㈜탑파트너스가 수탁자인 아시아신탁㈜에 시행을 위탁해 진행하는 관리형토지신탁사업으로서, 실질적인 사업주체는 위탁자인 ㈜탑파트너스이고, 아시아신탁㈜은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의 수탁자로서 신탁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의무를 부담합니다.
3. 아시아신탁㈜는 상기 신탁계약에 의하여 매도자의 지위를 가지는 자로서 신탁재산 및 신탁계약의 업무 범 내에서 책임을 부담하며, 분양대금의 반환의무, 입점지연에 대한 책임의무 등은 신탁계약의 위탁자인 ㈜탑파트너스가 부담한다.
4. 신탁 종료, 해지 등의 사유로 위탁자 겸 수익자 ㈜탑파트너스와 수탁자 아시아신탁㈜가 체결한 관리형 토지신탁 계약의 종료 또는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과 동시에 아시아신탁㈜가 분양계약상 매도인 지위에서 가지는 모든 권리와 의무(하자보수 및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의무 포함)는 계약변경 등 별도의 조치없이 위탁자 겸 수익자인 ㈜탑파트너스에게 면책적으로 포괄승계 됩니다.
5. 분양수입금은 토지비, 공사비, PF대출금 상환, 기타 사업비용 등의 지급에 사용될 수 있으며, 아시아신탁㈜가 본 사업과 관련하여 매수자에게 부담하는 모든 채무 및 의무는 신탁재산의 범위 내에서 부담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매수자는 아시아신탁㈜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탑파트너스는 본 사업 관련 아시아신탁㈜가 부담하는 채무 및 의무 일체에 대하여 실질적인 그 채무와 의무를 부담한다.
6. 본 계약과 관련된 분양대금은 반드시 본 공고에 규정된 수탁자(사업주체)인 아시아신탁(주) 명의의 계좌(해당 세대 가상계좌 입금 포함)에 입금하여야 하며, 그 외의 방법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분양(매매)대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매도인에게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7. 수탁자에게 발생하는 일체의 의무 중 분양계약 해제/해지 시 공급금액 반 채무이행 및 공사 지연을 제외한 사유로 발생하는 입주지연 지체상금은 시행자 겸 위탁자인 ㈜탑파트너스가 책임 처리하고, 본 공급계약 대상 재산에 대한 일체의 하자보수책임(사용승인 전 하자 포함)은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가 부담하며, 계약자(수분양자)는 아시아신탁㈜에게 일체의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고·표시사항

• 등록업자 : 아시아신탁(주) • 부동산개발업 등록번호 : 서울-080061(2008.03.04.) • 사업방식 : 관리형토지신탁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 분	사업주체 및 수탁자	위탁자(시행사)	시공사
상 호	아시아신탁(주)	주식회사 탑파트너스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주 소	서울특별시 영동대로 416, 13층 (대치동, 케이티앤지타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56 1층 103호 (하동, 탑프라자)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23길 55
등록번호	110111-3543801120-87-07104	214-87-23748	334-86-00815

■ 견본주택 위치 :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430 아이파크 갤러리

※ 주차공간이 부족하오니 가급적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문의 : 02-517-5706

※ 본 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 및 공급회사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 및 인허가 사항이 우선합니다.)